

2026. 9.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85
----------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출자 : 김영자, 김진수

손정애의원(3인)

1. 개정이유

- 김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권한 명시 및 서면 심의·의결 근거 신설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잘못 인용된 조항과 자구를 법제 표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항 인용 오류 정비 (안 제11조제1항)
- 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 명시 (안 제11조제3항)
-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용어 정비 (안 제11조제4항)
- 라. 서면 심의·의결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8항)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부
- 마. 입법예고 : 여

-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붙임자료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 마. 부서의견조회 결과보고서
- 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관련 조례 현황
- 마. 현행 조례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최하고”를 “개회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10조-----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 --.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 개최하고----- -----.
⑤ 삭제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 의정팀장 박성용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 입법예고 결과보고

제28회 김제지광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6. - 2026. 8. 24.(6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권영국	행정복지 전 문위원	김형원	의정팀장	대길 2026. 8. 25. 박성용	사무국장	전광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324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65	팩스번호	063-540-2777	/ 4972young@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부서의견조회 결과보고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의견조회 결과보고

김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6. 8. 16. ~ 2026. 2. 24.(6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4184(2026. 8. 18.) 로 공문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권영국	행정복지 전 문위원	김형원	의정팀장	대결 2026. 8. 25. 박성용	전결 의회사무국장
-----	-----	---------------	-----	------	------------------------	--------------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328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65 팩스번호 063-540-2777 / 4972young@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조례 현황

구분	제정 현황		비고
	여	부	
전북도의회	○		서면심의 가능
전주시의회	○		서면심의 가능
군산시의회	○		서면심의 가능
익산시의회	○		서면심의 가능
정읍시의회		○	
남원시의회	○		서면심의 가능
완주군의회	○		서면심의 가능
진안군의회	○		서면심의 가능
무주군의회	○		서면심의 근거 없음
장수군의회	○		서면심의 가능
임실군의회	○		서면심의 가능
순창군의회	○		서면심의 가능
고창군의회	○		서면심의 근거 없음
부안군의회	○		서면심의 가능

□ **현행 조례**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 2022.08.17 조례 제1510호

(일부개정) 2024.11.05 조례 제16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김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24.11.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 또는 김제시 사회발전과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24.11.5.>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4.11.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제8조에서 이동 2024.11.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상패 또는 부상(금전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10조(포상절차)[제9조에서 이동 2024.11.5.]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제10조에서 이동 2024.11.5.]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1.5.>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5.>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4.1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삭제 2024.11.5.>

제13조(포상의 제한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6.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5.>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11.5.]

부 칙<조례 제1890호, 개정 2024.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